

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-078호

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08-34호(2008.5.6.)로 지정하고 제2024-77호(2024.2.20.)으로 변경한 경기경제자유구역 포승(BIX)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5월 14일

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

경기경제자유구역 포승(BIX)지구 개발계획 변경

◆ 주요 변경사유

- 경제자유구역을 수소경제 선도구역으로 육성하고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지원센터를 포승(BIX)지구 산업용지 입지에 필요한 사항 반영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추진
 - (경제자유구역의 지정(변경)의 필요성) 당초 산업단지의 집적화, 서해안 성장벨트 구축에 금회 개발계획 변경사항인 수소에너지 산업의 거점 구축 사항 추가
 - (토지이용계획) 당초 녹지시설 등(하부 농업용수로)을 유수지로 중복결정
 - * 완충녹지 등(4,268.2㎡), 경관녹지 등(4,435.7㎡) → 유수지4, 유수지5로 중복결정
 - (주요 기반시설계획) 수소도시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용수·하수·에너지(열·전력) 공급계획 일부 변경
 - (업종유치계획) 수소도시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신규 업종 추가
 - * D35(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), M70(연구개발업), M72(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)

◆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

1. 경제자유구역(지구)의 명칭·위치 및 면적 : 변경사항 없음

- 가. 명 칭 :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(BIX)지구
- 나. 위 치 :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일원
- 다. 면 적 : 2,046천㎡

2. 경제자유구역 지정(변경)의 필요성 : 변경

(기정)

- 가. 산업단지의 집적화 및 네트워크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
- 나. 중국 동부연안도시의 빠른 성장에 대응하는 서해안 성장벨트 구축
- 다.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보완적·차별적 가능 분담으로 경쟁력 배가

(변경)

- 가. 산업단지의 집적화 및 네트워크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
- 나. 중국 동부연안도시의 빠른 성장에 대응하는 서해안 성장벨트 구축
- 다.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보완적·차별적 가능 분담으로 경쟁력 배가
- 라.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인 수소 산업 거점 구축
 -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수소경제가 주요 유망산업으로 부상

- 수소에너지 산업이 경기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('21.11)
- 포승(BIX)지구 등 국토부 제1기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선정
- 포승(BIX)지구내 수소도시 지원센터 건립 필요
 - 수소배관 등 수소분야 기반시설 사용 및 실증사업 추진에 유리
 - 수소도시 확장과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지원(탄소중립 전환 및 확산) 용이
 - 지구 내 수소관련 기업의 유치 및 지원
- 수소도시 지원센터 건립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수소경제 선도구역으로 육성

3. 개발사업의 시행자 : 변경사항 없음

사업시행자 명칭	사업시행자 주소	비 고
경기주택도시공사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(권선동)	
평택도시공사	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(비전동)	

4.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: 변경사항 없음

가. 개발기간 : 2008년 ~ 2020년

나. 시행방법 : 공영개발

5. 재원조달방법 : 변경사항 없음

가. 사업비 내역

(단위: 억 원)

구 분	계	보상비	조성비	각종 부담금	기타비용	비 고
사업비	7,702	3,616	1,714	923	1,449	

※ 보상비는 토지, 건물, 영업보상비 등 합산

※ 각종 부담금은 농지전용부담금 등 준조세 성격의 공적 부담금

나. 연도별 투자계획

(단위: 억 원)

구 분	계	2016년이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이후	비 고
계	7,702	4,624	546	737	844	951	

6. 토지이용계획 : 변경

- 수소도시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신규 업종 추가(변경)

[산업 11-5부지 : 4개 업종(C26, C28, C30, C31) → 3개 업종(D35, M70, M72)]
- 당초 녹지시설 등(하부 농업용수로)을 유수지로 중복결정

[완충녹지 등(4,268.2㎡), 경관녹지 등(4,435.7㎡)→유수지4, 유수지5로 중복결정]

구 분		면 적(m²)					구성비 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		증 감		
			합 계	산업단지	산업단지의외			
합 계		2,046,268.3	2,046,268.3	1,039,848.9	1,006,419.4	-	100.0	
주 택 건 설 용 지	소 계	78,782.7	78,782.7	-	78,782.7	-	3.9	
	공동주택용지	48,256.9	48,256.9	-	48,256.9	-	2.4	
	단독주택용지	30,525.8	30,525.8	-	30,525.8	-	1.5	
	근린생활시설용지	11,613.2	11,613.2	-	11,613.2	-	0.6	
상업 시설	소 계	16,460.1	16,460.1	-	16,460.1	-	0.8	
	상업시설용지	16,460.1	16,460.1	-	16,460.1	-	0.8	
산 업 시 설 용 지	소 계	782,363.6	782,363.6	782,363.6	-	-	38.3	
	자동차부품	105,930.4	105,930.4	105,930.4	-	-	5.2	
	기타기계	65,562.3	65,562.3	65,562.3	-	-	3.2	
	화학물질	95,428.0	95,428.0	95,428.0	-	-	4.7	
산 업 시 설 용 지	3개업종	-	9,850.9	9,850.9	-	증)9,850.9	0.5	
	4개업종	292,347.2	282,496.3	282,496.3	-	감)9,850.9	13.8	
	6개업종	219,363.8	219,363.8	219,363.8	-	-	10.7	
	변 전 소	3,731.9	3,731.9	3,731.9	-	-	0.2	
물류시설용지		555,981.4	555,981.4	-	555,981.4	-	27.2	
공 공 시 설 용 지	소 계	525,037.4	525,037.4	257,485.3	267,552.1	-	25.5	
	도 로	303,817.7	303,817.7	166,454.9	137,362.8	-	14.6	
	공 원	88,856.9	88,856.9	35,006.2	53,850.7	-	4.3	
	수도용지	1,714.6	1,714.6	-	1,714.6	-	0.1	
	공공녹지	106,622.2	106,622.2	48,385.9	58,236.3	-	5.2	
	오수처리시설	1,018.2	1,018.2	-	1,018.2	-	0.1	
	공공청사	6,007.9	6,007.9	6,007.9	-	-	0.3	
	주 차 장	15,360.1	15,360.1	1,630.4	13,729.7	-	0.8	
	보행자도로	1,639.8	1,639.8	-	1,639.8	-	0.1	
기타	소 계	76,029.9	76,029.9	-	76,029.9	-	3.7	
	유 보 지	44,712.9	44,712.9	-	44,712.9	-	2.2	
	복합지원용지	31,317.0	31,317.0	-	31,317.0	-	1.5	

※주1 :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지정(면적:45,383.7㎡)

※주2 : 산업시설용지 내 중복업종은 기존 평택 포승(BIX)산업단지 계획업종에 한함

- 4개업종 : C26, C28, C30, C31, - 6개업종 : C20, C26, C28, C29, C30, C31

※주3 : 금회 신규업종 추가

- 3개업종 : D35, M70, M72

※주4 : 1) 수도용지3 면적은 중복결정된 대로2-1(199.1㎡), 중로1-4(263.9㎡), 중로2-3(103.7㎡) 면적 포함

※주5 : 1) 유수지1(9,298.4m²) 면적은 근린공원1에 중복결정

2) 유수지2(13,569.8m²) 면적은 수변공원1에 중복결정

3) 유수지3(34,992.4m²) 면적은 수변공원1(32,773.9m²), 중로1-13(659.8m²), 중로1-16(665.3m²), 중로2-8(421.5m²), 중로2-10(442.5m²), 중로3-1(29.4m²) 중복결정

4) 유수지4(4,268.2㎡) 면적은 완충녹지1(686.4㎡), 완충녹지2(1,147.1㎡), 경관녹지1(250.4㎡), 경관녹지11(1,205.8㎡), 근린공원1(유수지1)(251.6㎡), 수도공급설비3(74.7㎡), 대로3-1(102.1㎡), 중로1-3(2.1㎡), 중로1-4(30.3㎡), 중로1-17(68.8㎡), 중로3-6(448.9㎡)에 중복결정

5) 유수지5(4,435.7㎡) 면적은 경관녹지1(1,207.6㎡), 경관녹지2(604.0㎡), 경관녹지3(1,902.1㎡), 경관녹지4(244.5㎡), 경관녹지5(81.7㎡), 중로1-8(249.1㎡), 소로2-30(45.5㎡), 소로3-1(35.6㎡), 소로3-2(26.4㎡), 소로3-4(39.2㎡)에 중복결정

7. 주요 기반시설 계획 : 변경**가. 용수공급계획 : 변경**

※ 산업 11-5부지(9,850.9㎡) 4개 업종(C26, C28, C30, C31) → 3개 업종(D35, M70, M72) 변경에 따른 공업용수량 변경

구 분	용 수 량 (㎥/일)			비 고
	기 정	변 경	증 감	
생활용수	2,984	2,984	-	
공업용수	4,950	4,883	감) 67	

나. 하수 계획 : 변경

※ 산업 11-5부지(9,850.9㎡) 4개 업종(C26, C28, C30, C31) → 3개 업종(D35, M70, M72) 변경에 따른 1일 최대 오수량 변경

구 분	하 수 량 (㎥/일)			비 고
	기 정	변 경	증 감	
1일 최대오수량	5,343	5,302	감) 41	

다. 에너지(가스, 열공급시설 등) : 변경**○ 에너지 열수요예측 : 변경**

※ 산업 11-5부지(9,850.9㎡) 4개 업종(C26, C28, C30, C31) → 3개 업종(D35, M70, M72) 변경에 따른 에너지계획 변경

구 분		열수요량(Gcal/년)			비 고
		기 정	변 경	증 감	
합 계		687,915	686,364	감) 1,551	
산업시설	직접열	249,971	248,501	감) 1,470	
	간접열	382,977	381,739	감) 1,238	
기타시설	난방/급탕	54,967	56,124	증) 1,157	

라. 전력공급 : 변경**○ 전력수요 예측 : 변경**

※ 산업 11-5부지(9,850.9㎡) 4개 업종(C26, C28, C30, C31) → 3개 업종(D35, M70, M72) 변경에 따른 전력공급계획 변경

구 분	최대부하(kW)			비 고
	기 정	변 경	증 감	
합 계	100,976	102,185	증) 1,209	
산업시설	32,705	32,304	감) 401	
기타시설(주택포함)	68,271	69,881	증) 1,610	

8.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: 변경사항 없음**9. 교통처리계획 : 변경사항 없음**

10. 산업유치계획 : 변경

가. 유치업종배치계획 : 변경

○ 산업시설용지 내 수소도시 지원센터 건립으로 신규 업종 추가(D35, M70, M72)

구 분	주요 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, 중분류)			
	기 정		변 경	
평택 포송 (BIX) 지구	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		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	
	C29 기타기계 및 장비		C29 기타기계 및 장비	
	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		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	
	4개 업종	C26 전자, 컴퓨터, 영상, 음향, 통신	3개 업종	D35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
		C28 전기장비 제조업		M70 연구개발업
		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		M72 건축 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
		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4개 업종	C26 전자, 컴퓨터, 영상, 음향, 통신
	6개 업종	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		C28 전기장비 제조업
		C26 전자, 컴퓨터, 영상, 음향, 통신		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
		C28 전기장비 제조업		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
		C29 기타기계 및 장비	6개 업종	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
		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		C26 전자, 컴퓨터, 영상, 음향, 통신
		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	C28 전기장비 제조업

나. 업종별 배치계획(용지별 유치업종) : 변경

구 분	유 치 업 종 (한국표준산업분류 : 중분류)	면 적(m ²)			비 고
		기 정	변 경	증 감	
계	-	782,363.6	782,363.6	-	
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C20)	95,428.0	95,428.0	-	
	기타기계 및 장비(C29)	65,562.3	65,562.3	-	
	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(C30)	105,930.4	105,930.4	-	
3개 업종	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(D35)	-	9,850.9	증)9,850.9	
	연구개발업(M70)				
	건축 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(M72)				
4개 업종	전자, 컴퓨터, 영상, 음향, 통신(C26)	292,347.2	282,496.3	감)9,850.9	
	전기장비 제조업(C28)				
	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(C30)				
	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C31)				
6개 업종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C20)	219,363.8	219,363.8	-	
	전자, 컴퓨터, 영상, 음향, 통신(C26)				
	전기장비 제조업(C28)				
	기타기계 및 장비(C29)				
	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(C30)				
	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C31)				

11. 보건의료·교육·복지시설 설치계획 : 변경사항 없음
12. 환경보전계획 : 변경사항 없음
13.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: 변경사항 없음
14.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: 변경사항 없음
15.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: 변경사항 없음
1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·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: 변경사항 없음
17. 문화시설·공원·녹지계획 : 변경사항 없음
18. 도시경관계획 : 변경사항 없음
19.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: 변경사항 없음
20.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: 변경사항 없음
21.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: 변경사항 없음
22.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: 변경사항 없음
23.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·수립·확정·승인·변경 등 의제사항 : 변경사항 없음
24. 관련도서의 열람방법
 -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 포승(BIX)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(031-8008-8619)에서 열람할 수 있음.